

「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13(수) 정문섭 의원 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2. 6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2. 6. 21(목)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정문섭 의원)

- 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11.10.15 시행)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2011. 10. 15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조례 본문 내용 중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